



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2026. 5.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2027년 주요 변경사항

기존(2026년)	변경(2027년)	변경사유
<지원비율> ○ 도비 60%, 시군비 10%, 자부담 30%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 '27년 전환사업 예산 편성 기준 변경* 에 따른 도-시 군비 조정 * 기준보조율 - (도) 40 : (시·군/기타) 60
<지원요건> ○ -	<지원요건> ○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 지원요건 강화로 보조사업 부실화 방지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실적 의무화를 통한 지역농업 상생 도모
<지원요건> ○ -	<지원요건> ○ 지역 농축산물 최근 2개년 평균 매입실적 5천만원 이상 (원물 자체 공급 시, 별도 증빙 필요)	

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I 사업 목적

-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1차, 2차, 3차 복합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농촌산업 활성화
-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II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7년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7. 1. ~ 12.
- 지원단가 : 개소당 총사업비 7억원 * 예산 심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제조·가공·유통 기반구축) 농산물 제조·가공·유통 관련 시설 신축·증축·개보수, 장비 구입 등
 - (체험·휴양 기반구축) 체험시설 개보수, 농촌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III 추진 계획

- 신청기간 : 2026. 5. 22.(금) ~ 6. 19.(금)
 - ※ 기간 중 15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실시(시·군)
- 지원대상 : 시·군,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산물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농촌융복합인증경영체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 목적달성 등을 위해 필요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대상 범위 설정
-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심사평가 : 전문가 서면·현장평가(7~8월경) 및 우선순위 확정
 ※ 최종선정 12월중(시·군 개별 통보)

III 지원요건

구분		지원요건	증빙자료
공통	① 운영실적	▶ 운영실적 1년 이상일 것 - 작목반 등 비법인의 법인전환 경우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자등록증
		▶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1억원 이상 ^{신설}	▶ 재무제표 등 (손익계산서)
	② 사업부지	▶ 건물 신축의 경우, 보조사업자 명의의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또는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10년) 이상으로 전세권·지상권 설정 - 단, 선정 후 사업개시 이전 저당권 해지에 관한 약약을 제출할 경우 신청가능하며, <u>약약서 제출 시 구체적인 저당권 해지계획을 포함하여야 함.</u> - 사업완료까지 사업부지 근저당권 등 설정 불가	▶ 토지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저당권 해지 약약서 (필요시)
		▶ 사업계획서상 자부담 확보 여부	▶ 자부담 통장사본, 잔액증명원 등
④ 지역농업 연계성	▶ 주재료 국내산 100% 사용 및 지역 농축산물 최근 2개년 평균 매입실적 5천만원 이상 ^{신설} (원물 자체 공급 시, 별도 증빙 필요)	▶ 원료 수급대장 확인서 ▶ 계산서, 납품확인서 등 매입증빙자료	
농업법인	⑤ 경영체등록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농업법인은 법인명으로 경영체 등록 필수	▶ 농업경영체등록증
	⑥ 농업법인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 법인등기부등본 ▶ 조합원경영체등록증 (영농조합법인) ▶ 주주명부(농업회사법인)
농축산물 가공업체	⑦ 지역농산물 매입실적	▶ 최근 2개년('23~'24) 지역농산물(도내) 계약재배 또는 매입실적 평균 2억원 이상	▶ 계산서, 계약서 등 매입증빙자료

※ 지원요건 충족여부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완료 시까지 유지하여야 함.

□ 지원제한

- 기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사업 정산일 기준)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는 5년간 동사업 지원 제한

IV 선정평가

□ 평가방향

- 지역 농축산물 매입여부(실적) 등 확인을 통해 지역농업 상생 여부
-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 및 재무구조 등 자금확보 능력
- 지원사업의 구체적 계획성을 판단하여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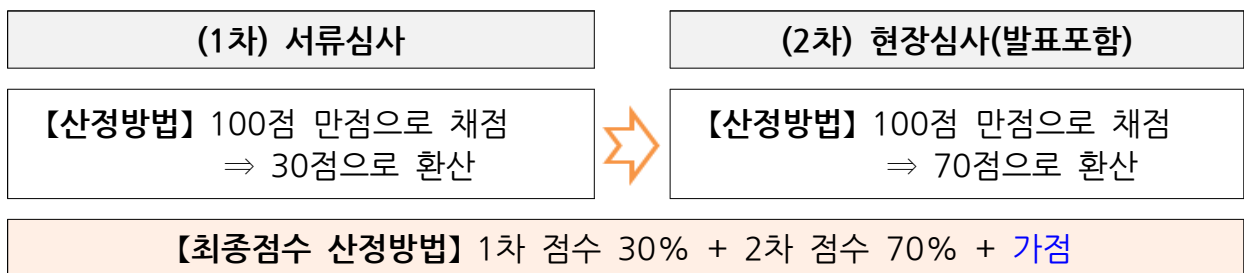
□ 평가기준

합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농업 연계성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사업의 성공가능성	사업추진 기대효과	가점*
100	20	20	15	25	20	5

- * ①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원대상사업에 포함된 경우(3점)
 ②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예비인증 포함)(2점)
 ※ 항목별 점수는 평가계획 수립 시 변동가능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1차 서류심사 :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업체 통과
 - 2차 발표평가 : 업체별 발표평가* 이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 발표 5분 + 질의응답 15분

VI 추진 일정

① 시·군 공모 신청·접수	'26. 6. 19.까지
↓	
② 시·군 사업신청서 → 도(농업정책과) 제출 - 시·군 자체 심사·평가 후 2개소 제출	'26. 7. 1.까지
↓	
③ 도 심사평가 - 심사위원회 구성·심의(전문가 참여)	'26. 7월
↓	
④ 예산신청(도 우선순위 확정) - 농업정책과 → 도 예산부서	'26. 8~9월
↓	
⑤ 예산요구안 실무심사(도 예산부서) 및 예산안 편성	'26. 10~11월
↓	
⑥ 도 '26년 당초예산 최종 확정	'26. 11월초

* 추진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심사일정 별도 통보 예정)

VII 행정 사항

□ 시·군 공모 및 신청서 접수(5~6월)

- 시·군 자체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고 : '26. 5월중
- 사업자 사업신청서 접수 : '26. 6. 19.까지
- 시·군(자체) 지원대상 심사·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 '26. 7. 1.까지
 - 시행지침 및 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준비사항, 사업성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기준 미달, 사업성이 낮은 경우 신청에서 제외
 - 자체 심사를 거쳐 시군별 2개소 이내 사업대상자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 시·군(총괄 사업부서)에서 도 농업정책과로 일괄 제출
- 사업신청서는 책자 제본하여 7부 제출
 - ※ 붙임자료가 첨부될 수 있도록 조치

①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5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건물을 신축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단, 당해 법인 명의를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